Ⅲ. 교과과정 적용 원칙

- A. 교과과정이 변경되었을 경우 현행 교과과정을 적용하며 다음에 따른다.
 - 가. 필수과목 중 미이수한 과목 또는 미취득한(F) 과목이 학년이나 학기가 변경되어 개설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교과목명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대치과목이수) 다만, 미이수한 과목 또는 미취득한(F) 필수과목이 폐지되거나 선택과목으로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교원자격과 관련한 교직과목과 기본이수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 필수가 선택으로 변경된 교과목의 학점을 미취득(F) 하였을 경우 졸업에는 문제가 없으나 F가 지워지는 것은 아님(F를 지우기 위해서는 재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여야 함)
 - 나. 필수과목이 추가되거나(선택이 필수로 된 과목 포함) 학점 수가 달라진 과목은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교원자격과 관련한 교직과목과 기본이수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다. '산업현장실습, 취업캠프< I~III>', '기업실무< I, II, III>, 산업인턴십< I~V>'교과목은 반드시 취업지원처(취업지원팀)의 확인을 받은 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수강신청 할 경우 인정하지 않음)(2015.01.15 개정)
- B. 교과과정 개편으로 인하여 변경된 전공, 교양, 교직과목은 반드시 대치과목을 확인하여 한다.
- C. 대치과목: 학과 사무실로 문의하여 반드시 확인한 후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
 - ※ 대치과목을 전산 입력하여 수강신청 시 재수강이 아니면 입력을 할 수 없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완전하지 않으므로 꼭 대치과목을 확인하기 바람

Ⅳ. 부전공과정 이수 안내

1. 이수 범위 및 허용 인원

가. 부전공은 부전공 필수과목을 지정한 학과를 대상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부전공 학과의 교육 여건을 감안하여 허용인원을 제한 할 수 있다.

※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사범대학 및 교직이수예정자의 교원자격 관련 부전공은 폐지됨.

나. 부전공은 소정기간에 신청(매 학기말)하여 이수 허가를 받아 2학년 1학기부터 이수할 수 있다.(2015.01.15 개정)

2. 이수 학점

- 가. 사범대학을 제외한 학과의 부전공은 해당 학과에서 지정하는 필수과목을 포함 하여 2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나.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이 전공과 부전공 각 교과영역에 공히 해당될 때는 이를 중복하여 인 정한다. 단, 취득학점의 합계는 전공영역으로 산출한다.
- 다. 부전공 이수도중 사정에 의하여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부전공 취소신청서를 학사지원팀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
- 라. 부전공을 이수중인 학생이 졸업에 필요한 제1전공을 모두 충족 시 졸업이 된다. 다만, 마지막학 기 성적 확정 후 일정 기간에 본인이 졸업연기원을 제출할 경우 졸업이 연기된다.

3. 이수 신청

구 분	내 용	비고
신청기간	매 학기말	
신청장소	학과사무실	
대 상 자	재학생	
구비서류	부전공(이수, 변경, 포기)신청서	*학과사무실 비치